

case

1

## 알루미늄 포일

### 요약

사례명	알루미늄 포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HQ H302201 (2020.04.06.)
사실관계	중국산 포일스톡을 독일로 수입한 후, 냉간 압연, 어닐링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알루미늄 포일 생산
쟁점 및 판정	<p>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p>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산 포일스톡이 완전히 다른 상업적 제품인 알루미늄 포일로 변형되었으므로 독일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냉간 압연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의 두께가 최대 98%까지 감소함</li><li>- Ferrostaal(1987) 판례와 유사하게 어닐링 공정은 화학적 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, 원자재의 연성과 연질성을 회복시키고, 포일의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계적 특성을 추가로 변화시킴</li><li>- 알루미늄 포일은 포일스톡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며, 식품, 의약품 등 제품의 포장재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용도 또한 상이함</li><li>- 더불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,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며, 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 및 시간 또한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높음</li></ul>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</li><li>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</li></ul>

## I 판정사례

### 사례명 [알루미늄 포일]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HQ H302201 (2020.04.06.)

#### 사실관계

요청자 Amcor Flexibles Singen GmbH (대리인: Drinker Biddle & Reath LLP)

제품명 • 알루미늄 포일

제품 구성 • 포일 스톡

용도 • 식품, 의약품 등 제품의 포장재

#### 제조공정



01

중국산 포일스톡  
독일로 수입



02

어닐링 및 냉간 압연 공정 등  
수행



03

미국 수출

상세공정 1. 중국산 포일스톡(foil stock)를 독일로 수입

2. 독일 제조 공정

- 압연 작업을 위해 어닐링 공정 수행
- 냉간 압연 공정을 통해 두께 감소(3~4mm에서 0.25~2mm로 두께 감소)
- 추가 어닐링 공정 수행(연화 및 표면 윤활유 제거)
- 필요한 경우 코팅, 래커 처리 또는 적층 공정 수행

3. 미국 수출

## 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### 관련 법령 및 분석

1

####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##### 관련 법령 검토

- 『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』에 따르면,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, 지워지지 않게,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
-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,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해야 함
  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❖ 참고 판례: *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, Inc.*, 27 C.C.P.A. 267 (C.A.D. 98) (1940)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*, 69 C.C.P.A. 142, 681 F.2d 778 (1982)

-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의 판례 및 사전심사 결정문을 인용

❖ 참고 판례: *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*, 664 F. Supp. 535 (Ct. Int'l. Trade 1987)

- 어닐링 공정이란 강철 제품의 냉간 압연 후 연성(ductility)을 복원하기 위해 고온으로 가열한 후, 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급속 냉각하는 공정임
- CIT(Court of International Trade, 국제무역법원)는 어닐링 공정이 실제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치수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나, 강철 내 탄소와 질소의 분포에 영향을 미쳐 냉간 압연된 강철의 변형 에너지를 제거하고, 강도는 낮추는 대신 연성과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
- CIT는 연성과 강도가 강철의 중요한 특성이며, 어닐링 공정은 강철의 성질(character)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판단하였고, 이 공정을 통해 새롭게 부여된 강도와 연성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전용되었다고 판단
- 비슷한 맥락에서 CIT는 판유리를 가열한 뒤 급속 냉각하여 강도를 증가시키는[일반적으로 템퍼링 (tempering) 이라 불림] 공정 또한 새로운 상업적 제품을 창출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[*Guardian Industries Corp. v. United States*, 3 CIT 9, 16 (1982) 인용]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NY H84171 (2001.08.10.)*

**사례**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산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코일을 가공(냉간 압연을 통한 두께 감소 및 성형성 부여를 위한 어닐링 공정 수행)하여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판 생산

**판정**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함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H242034 (2013.08.12.)*

**사례** 중국에서 냉간 인발 공정을 통해 생산된 green pipe를 일본으로 수입하여, 1차 어닐링, 냉간 인발, 2차 어닐링, 교정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공정 수행

**판정** 반가공 제품이 ASTM A312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완제품으로 전환되었기에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, Ferrostaal 판례에 부합하게 어닐링 공정이 초기 green pipe에 새로운 명칭, 특성, 용도를 부여한다고 판단함

## 관련 법령 및 분석

### 판정 결과

- ▣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산 포일스톡이 완전히 다른 상업적 제품인 알루미늄 포일로 변형되었으므로, 독일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
  - 냉간 압연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의 두께가 최대 98%까지 감소함
  - Ferrostaal(1987) 판례와 유사하게 어닐링 공정은 화학적 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, 원자재의 연성과 연질성을 회복시키고, 포일의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계적 특성을 추가로 변화시킴
  - 알루미늄 포일은 포일스톡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며, 식품, 의약품 등 제품의 포장재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용도 또한 상이함
  - 더불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,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며, 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 및 시간 또한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높음

### 결론

- ✓ 최종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독일임

## II 시사점

- CBP는 포일스톡을 가공하여 알루미늄 포일을 만드는 경우, 냉간 압연 및 어닐링 공정이 포일 스톡의 화학적 조성을 변형시키지는 않으나, 연성, 연질성 및 기계적 특성이 변화하고 두께가 현저히 감소하여 전혀 다른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함

## III 참고자료

- CBP Ruling HQ H302201 (2020.04.06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H302201>
- CBP Ruling NY H84171 (2001.08.10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H84171>
- CBP Ruling HQ H242034 (2013.08.12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H242034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304&num=0&edition=prelim>
- 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 (1940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1707/united-states-v-gibson-thomsen-co/?q=United+States+v.+Gibson-Thomsen+Co>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>
- 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 (1987), [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504219/ferrostaal-metals-corp-v-united-states/?q=Ferrostaal+Metals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\\_by=score+desc&stat\\_Published=on](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504219/ferrostaal-metals-corp-v-united-states/?q=Ferrostaal+Metals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)